

[별표 1] 소화시험

1. 소화시험설비 및 일반사항

- 1.1 개구부는 [별표 2]에 의하여 산출된 최대개구부 면적을 동일한 방법으로 각각 설치하여 소화시험을 실시한다.
- 1.2 소화용구를 (사용하한온도 ± 2) $^{\circ}\text{C}$, (20 ± 2) $^{\circ}\text{C}$, (사용상한온도 ± 2) $^{\circ}\text{C}$ 에서 24시간 보존한 후 각각 소화시험을 실시한다.
- 1.3 소화시험실의 체적에 따른 소화시험방법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소화시험실 체적에 따른 소화시험방법

소화시험실 체적 (m^3)	A급				B급	비고	
	소화시험모형(각목) (가로×세로×길이) (mm)	예비연소			소화시험모형크기 ($L_1 \times L_2$) (mm^2)	소화시험실 최소높이 (mm)	방출구와 소화모형과의 최소이격거리 (mm)
		헵탄 (mL)	시간 (초)	팬(L) (mm)			
0.04 이하	20 × 20 × 100	70	240	100	6,000	400	200
0.12 이하	25 × 25 × 110	70	240	110	8,000	700	400
0.36 미만	30 × 35 × 120	70	240	120	10,000	1000	700

※ 비고 : 방출구와 소화모형과의 최소이격거리는 소화모형의 최상단에서 측정한 거리를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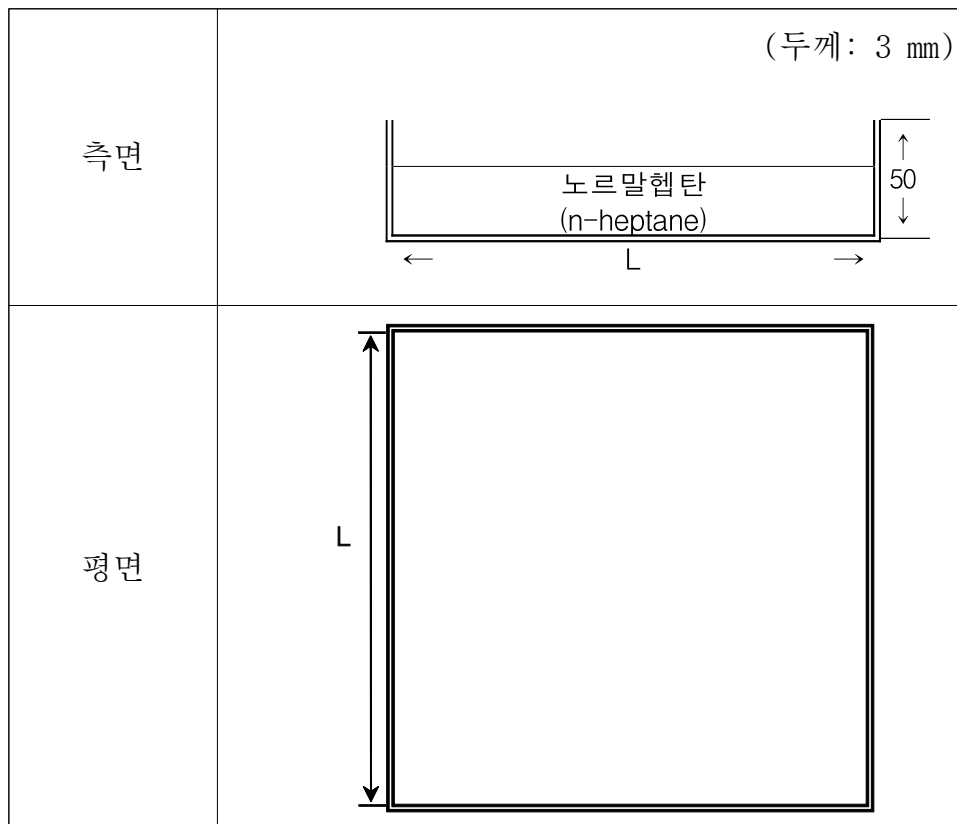
2. A급의 소화시험(목재소화시험)

- 2.1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목재는 수분함유율이 9 wt% ~ 13 wt%인 소나무 또는 가문비나무를 사용하며 1.3에서 정하는 소화시험실체적별 소화시험모형(각목)의 크기를 사용한다.
- 2.2 한단에 3개씩 균등하게 배열하고 4단으로 교차하여 배치(3열4단)하며 바깥쪽모서리를 맞추어 붙이고 바닥으로부터 70 mm이상 이격하여 소화시험실 중앙에 위치시킨다.
- 2.3 목재화재모형의 점화용 연소대는 탁자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목재화재모형을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상부판의 바닥은 열려

있어야 한다.

2.4 화재모형의 점화용 연소대에 점화하고 예비연소 후에 소화용구가 자동으로 감지하여 작동하도록하여 시험한다. 다만, 예비연소는 소화시험모형 밖에서 실시하고 예비연소 종료 15초 전부터 소화설비 작동 전까지의 사이에 소화시험모형 중앙에 위치하도록 넣어 시험한다.

2.5 1.3의 표에서 정하는 예비연소시간 동안 연소 시키며 예비연소팬은 다음 그림의 시험모형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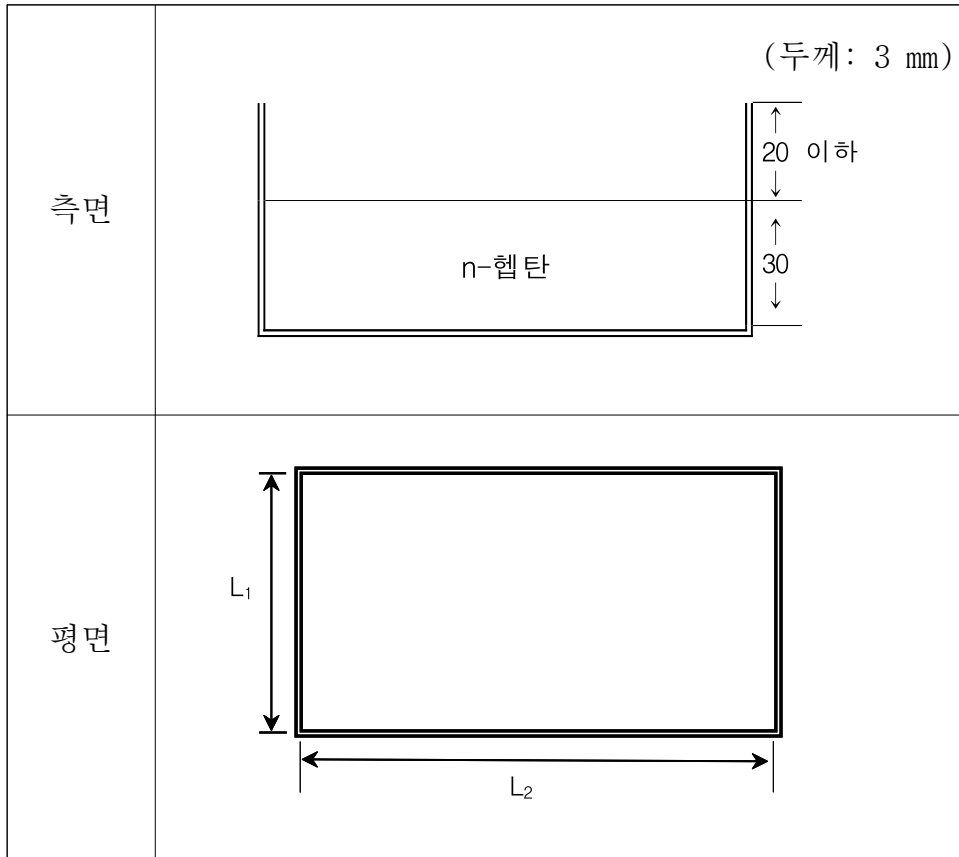
[A급(목재화재) 소화시험의 예비연소팬] (단위 : mm)

3. B급 소화시험(유류화재)

3.1. 소화시험은 1.3의 표에서 정하는 B급 소화시험모형(세로(L_1), 가로(L_2), 높이 50 mm, 두께 3 mm)에 그림과 같이 노르말헵탄(n-heptane)을 넣고 소화시험실 바닥으로부터 50 mm이상 이격하여 소화시험실 중앙에 위치시킨다.

3.2. 소화모형의 노르말헵탄(n-heptane)에 점화하여 30초간 예비연소 후 문을 닫고 소화용구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하여 시험한다. 다만, 예비연소는 소화시험모형 밖에서 실시하고 예비연소 종료 15초전부터 소화설비 작동 전까지의 사이에 소화시험모형 중앙에 위치하도록 넣

어 시험한다.



[B급(유류화재) 소화시험모형] (단위 : mm)